

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2017. 4. 21.

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

1. 제안자: 성동구청장

2. 제안이유

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모범납세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, 개정된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며 수수료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(안 제6조제1항제3호, 제8호, 안 제6조제4항)
- 나.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모범납세자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 (안 제 제6조제1항제9호, 제10호, 제11호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37조(수수료), 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
- 2)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
- 3)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4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

5) 「문화재보호법 시행령」 제36조

6)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7. 2. 23. ~ 2017. 3. 15.)

2) 규제심사 : 신설 또는 강화규제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특기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특기사항 없음

5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에 ‘5.18 민주 유공자, 특수임무 유공자, 모범 납세자’를 추가하고, 수수료 감면 대상에 인용되는 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, 「문화재보호법 시행령」 ,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)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 기존 감면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관계 법령과의 연계성을 체계화 하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 됨